



농약 라벨 표기내용 및 광고기준 무엇이 바뀌었나?

‘행위금지·강제’ 그림문자표기 의무화 적정사용·보관위한 의무표기사항 마련

**마스크-흡입독성, 보안경-안점막자극성, 고무장갑-피부자극성
사용전 라벨읽기·표시사항외 사용금지·어린이손 안닿는곳 보관**

홍보부

농약공업협회는 농약안전사용 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회원사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농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농약 라벨(포장지)을 읽도록 하는 등 올바른 농약 사용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농약 라벨은 사용자가 보기 쉽고 읽기 쉽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농약협회에서는 라벨을 보기 쉽고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1996년에 「농약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을 만들어 운용하여 왔으며 그동안 다양한 안전을 요구하는 정세를 감안하여 일부 개정을 거듭해 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조물 책임(PL)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기사항의 그림문자를 행위금지 사항과 행위강제 표시사항을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보완, 수정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농촌진흥청 관계관 및 각 회사의 관계자가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성안하기에 이르렀다(표 1).

또한 농약 표준광고용어 권장기준에도 각종 농약광고시 PL 사고방지를 위하여 농약의 적정사용 문구를 포함한 의무 표시사항을 표기도록 함으로써 농약사용자들의 안전사용 의식을 제고하고 중독사고 예방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화했다. 농약의 라벨표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과 농약의 표준광고용어 권장기준 사항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표 1. 농약포장지 표기 권장기준

표시사항	표 시 내 용	비 고
○ 등록번호	○ 농촌진흥청 등록번호	예) 1-실균-205
○ 명칭 및 제제형태	○ 품목명, 상표명, 제형을 표시	예) 만코지수화제(품목명) 다이센엠-45수화제(상표)
○ 유효성분 함유량	○ 국제적으로 통용된 일반명을 로마자로 표시, 함유량은 백분율	예) Mancozeb-75%
○ 기타성분 함유량	주성분 이외의 성분을 표시 주성분 이외의 함유량	예) 계면활성제, 증량제…25%
○ 포장단위	용량은 ml, l로 표시 중량은 g, kg으로 표시	예) 입제 3kg, 유제 500ml
○ 독성 또는 잔류성	급성독성 구분에 의거 표시 I 급 및 II 급 약제 적색 글씨	예) I 급 맹독성 ※ 현재 등록약제 없음 II 급 고독성 III 급 보통독성 IV 급 저독성
○ 어독성	어독성구분에 의거 표시 I 급 약제 적색글씨	예) 어독성 I 급 어독성 II 급
○ 용도구분	비탕색으로 구분 (용도표시) ○ 원예용(수도용) 살균제 또는 살균제 등 ○ 논(밭, 파원, 잔디, 산림제초제 또는 제초제)	예) 살균제 : 분홍색 살충제 : 녹색 제초제 : 황색 비선택성제초제 : 적색 생장조정제 : 청색 기타약제 : 백색 혼합제 및 동시방제제 : 색깔병용
○ 적용작물 적용병해충(잡초) 사용량 및 시기	○ 약효 약해 수확물의 안전등의 시험결과 가장 안전한 상태임. 등록증에 근거하여 표시.	예) 사과, 잎말이나방 벼, 일년생 및 다년생 잡초
○ 주의사항	○ 농약을 안전하게 취급하는데 필요한 보호장비, 흔용관계, 보안요령 등 그 약제의 성질상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 ○ 사용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문구를 라벨 전면 상단에 잘 보이도록 표기 - 사용전에 라벨을 잘 읽을 것 - 라벨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말 것	
○ 특 징	○ 작용기작상의 특성을 표시	
○ 약효보증기간	○ 경시변화를 감안, 보증기간동안 주성분이 표시함량 이상 보증	
○ 기타	○ 제조모집단번호, 제조(수입) 회사명 및 주소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농약용기처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	

표 2. 행위금지·강제표시 그림문자

행위 금지의 표시	행위의 강제 표시
	마스크 착용
	보안경 착용
	불침투성 장갑 착용
	불침투성 방제복 착용
	농약보관창고(상자)에 잠금장치 보관
	주의·경고 마크

■ 행위 금지 및 강제표시 그림문자

고독성 및 어독성 농약, 꿀벌·누에·조류독성 농약, 분제농약, 파라코 액제 농약에 대한 행위금지의 그림문자와 행위강제 표시 그림문자 표기대상 약제는 표2와 같다. 행위강제 표시 그림문자 표기대상 약제를 보면 마스크 및 보안경, 고무장갑, 방제복의 보호장구와 열쇠(잠금장치), 음용금지 표시 등이 있다.

이중 흡입독성에 대해서는 마스크 그림문자를, 안점막자극성에 대해서는 보안경, 피부자극성 약제에 대해서는 고무장갑 및 방제복 그림문자를 반드시 표기도록 했으며 또한 고독성 농약은 열쇠(잠금장치)그림을, 고독성 및 유·액제농약은 음용금지 그림문자를 표기도록 의무화 했다.

■ 농약 표준광고용어 권장기준

이번에 개정된 농약 표준광고용어 권장기준을 보면 제2장(광고의 기준 및 방법) 제3조(광고의 방법) 중 ⑥항을 신설하고 사용자의 신체,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회사가 발행하는 제품안내 책자는 물론 월·계간지 등 각종 인쇄물에는 첫째, 농약 사용 전에 라벨을 잘 읽고 사용할 것 둘째, 라벨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셋째,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는 놓아두거나 보관하지 말 것 등의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게재, 홍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PL법 시행에 따른 효율적 대응은 물론 농약사용자들의 안전사용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중독사고 예방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약정보**